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행정사 업무신고를 위한 실무교육 이수 관련 질의회신

1.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1817(2018.6.14.) 관련입니다.

2.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 후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행정사 업무신고를 위한 실무교육 이수방법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법 제10조(업무신고) 및 제25조(행정사의 교육),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행정사 업무신고) 및 제23조(행정사의 교육)에 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20시간 및 실무수습교육 40시간을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과-3044호(2017.12.22., 2018 행정사 실무교육계획 알림)에 따라 행정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제도 이해, 민원행정 실무, 계약 실무, 부동산 및 차량등록 실무, 출입국 관리 실무, 교통 및 보훈실무이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제도 이해, 민원행정 실무, 번역실무, 출입국관리 실무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사 실무교육은 다른사람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행정사로서 업(業)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일반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실무수습 40시간을 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 등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사례를 습득하고, 번역시 주의사항 및 요령 등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반행정사의 실무교육과 별개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실무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 참고로, 보험업법 제186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4조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종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로 구분하며, 각각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사무관 임선정

행정사무관

손지혜

주민과장

전결 06/25  
김군호

협조자

시행 주민과-3182 ( 2018.06.25. ) 접수 자치행정과-12520 ( 2018.6.25.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503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840 / 전송 02-2100-4297 / sjlim6595@korea.kr / 대시민공개